

- 인상 : 레저시설(162종), 저장시설(30종) 등 307종  
수심 1m, 철근콘크리트 풀장(63,700→65,611천원, 1,911 ↑) 외 306종
- 인하 : 주유시설(3종)  
한국라쓰노 EC-SHS(7,923→7,700천원, 223 ↓) 외 2종
- 동결 : 주유시설(344종)
- 부수시설물 (211종) : 0.01% 인상
  - 신규 : 에어컨(7종), 교환시설(10종)  
80RT 공냉식 에어컨(31,152천원) 외 16종
  - 인상 : 에어컨(6종)  
3RT 공냉식 에어컨(2,014→2,240천원, 226 ↑) 외 5종
  - 동결 : 에레베이터(10종), 에스컬레이터(20종) 등 198종

## ⑤ 입 목

입목의 과세표준은 국내 목재(갱목 등) 수급저조와 수입원목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하였고 농림업·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전년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동결하였다.

## 3. 시·도 자율조정 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내용 : 6종

과세대상물건중 전국적인 균형조정을 할 수가 없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과세대상물건의 실정에 맞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조정기준을 권고한 것이다.

### ① 어업권·광업권·지하자원

- 어업권·광업권 :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시 시가조사 결정
- 지하자원 : 시·도간 가격편차로 인하여 전국 균형조정이 어려우므로 시·도별